제2316호

고양시보

2026년 10월 16일 (금)

차 례

규 칙

고양시 규칙 제1237호	고양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1
고양시 규칙 제1238호	고양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9

발행 : 고양시 / 편집 : 언론홍보담당관 / (우)1046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600) / ☎ (031) 8075-2095 /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고양특례시

고양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고양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민 경 선 ㊞

2026년　10월　16일

고양시 규칙 제1237호

고양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및 제6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양시가 설치·설립한 지방직영기업 및 지방공사에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의2 및 제66조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고양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 선정・변경・해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지방공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장·국장 및 사업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1.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경영・회계・재무・법률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3. 지방공기업 경영・회계・재무・법률 등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심의・의결이 완료되면 자동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이 경우 시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은 그 회의의 위원장 선출을 위한 임시 의장이 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사안이나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회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방공기업 업무 담당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6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사 및 선정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나 심의 내용 등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

제7조(회계감사인 선임원칙 등) ① 회계감사인의 선임기간은 회계감사인의 귀책 등 특별한 변경사유가 없는 한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감사계약은 1년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한다. 이 경우 연차별 계약 갱신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생략할 수 있다.

② 동일한 회계감사인은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해 해당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③ 회계감사인은 지방공기업 별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회계감사인 선정방법 및 절차) ① 회계감사인 선정을 위한 제안서 모집 및 접수는 각 지방공기업에서 주관한다.

② 지방공기업은 제안요청서에 감사범위・감사기간・평가기준・계약조건 등 회계감사인 모집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고양시 및 해당 지방공기업의 누리집에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③ 지방공기업은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제안서를 검토한 후 별표의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를 별표의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 점수가 높은 자를 선임대상자로 결정하고 시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평가 결과 총점이 60점 미만인 자는 선임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⑤ 지방공기업은 공개모집 결과 응모자가 없거나 경쟁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또는 선임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

약방식으로 회계감사인을 선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9조(회계감사인 선임 및 계약체결)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선임대상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고, 각 지방공기업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추천받은 선임대상자가 계약체결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에 따라 바로 다음 순위 대상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반영하여 회계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지방공기업의 장은 회계감사인에게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2026회계연도의 회계감사를 위하여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 관 부 서		예산담당관
입안자	부 서 장 성 명	예산담당관 김 보 경
	팀 장 성 명	경영평가팀장 김 민 정
	담 당 자 성명・연락처	최 지 녕 (031-8075-2358)

[별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표(제8조제3항 및 제4항 관련)

1.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	배점	평점					비고
			A	B	C	D	E	
[정량] 감사수행 역량 (40)	① 경 력 - 법인설립일부터 제안서 마감일까지의 근무연수	5	15년 이상 (5)	10년 이상 (4)	5년 이상 (3)	3년 이상 (2)	3년 미만 (1)	
	② 전문인력 보유현황 - 제출일 기준 공인회계사 수 (수습공인회계사 제외)	10	20명 이상 (10)	15명 이상 (8)	10명 이상 (6)	5명 이상 (4)	5명 미만 (2)	
	③ 징계현황 - 최근 3년간 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징계처분 사실 (법인기준)	5	0건 이하 (5)	3건 미만 (4)	6건 미만 (3)	10건 미만 (2)	10건 이상 (1)	
	④ 주요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공공기관 감사실적	20	10건 이상 (20)	8건 이상 (18)	6건 이상 (16)	4건 이상 (14)	4건 미만 (12)	
[정성] 감사수행 계획 (60)	⑤ 감사계획의 적정성 - 감사수행 중점사항 및 전략 수립 - 감사일정 및 시간 등 계획의 충실도	10	매우 적절 (10)	적절 (8)	보통 (6)	미흡 (4)	매우 미흡 (2)	
	⑥ 감사조직체계의 적정성 - 감사 수행인력 구성원 수 - 감사 수행인력 경력 및 자질 등	10	매우 적절 (10)	적절 (8)	보통 (6)	미흡 (4)	매우 미흡 (2)	
	⑦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도 - 지방공기업 회계 특성 이해도 및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숙달 정도	15	매우 적절 (15)	적절 (13)	보통 (11)	미흡 (9)	매우 미흡 (7)	
	⑧ 회계서비스 제공내용 - 회계 관련 자문서비스 제공 및 재무적 위험요소 개선 권고 등	15	매우 적절 (15)	적절 (13)	보통 (11)	미흡 (9)	매우 미흡 (7)	
	⑨ 소요 예산의 적정성 - 감사 투입인력 및 시간 대비 가격경쟁력·합리성	10	매우 적절 (10)	적절 (8)	보통 (6)	미흡 (4)	매우 미흡 (2)	
총 점		100	합 계: _____점					

2. 평가 방법

가. 정량평가는 각 지방공기업에서 증명서류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나. 정성평가는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최저점 · 최고점이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한다)

다.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로 하고, 정성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위원회의 투표를 거쳐 선정한다.

고양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안이유

○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및 제66조에 따라 고양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제2항).

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라. 그 밖의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고양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고양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민 경 선 ㊞

2026년　10월　16일

고양시 규칙 제1238호

고양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고양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숙직근무의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5일”을 “업무 수행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직 종료 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6주”로, “선택하여”를 “지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행정지원과
입 안 자	부 서 장 성 명	행정지원과장 김 석 재
	팀 장 성 명	행정지원팀장 장 주 민
	담 당 자 성명・연락처	박 성 우 (031-8075-2175)

고양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 제안이유

○ 현행 규칙은 당직근무 후 대체휴무를 5일 이내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서별 업무 여건 등으로 휴무 조정에 어려움이 있어 규칙 일부 개정을 통해 근무자들의 휴무 사용 편의를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당직근무 후 대체 휴무 사용 기간 확대(제4조).